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
 범 인 **대한병원협회**

수 신 전국 병원장

참 조 보험(원무)부서장

제 목 **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
 지 안내(스티렌정)**

1. 관련근거 : 가.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-2172(2014.6.20)

나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-75호(2014.5.26)

2. 위 근거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이 "위 호 개정고시의 별지
 기재 스티렌정에 대한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부분은 이 법원 2014구합
 59191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"고 결정함
 (2014.6.20)에 따라

3.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9191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
 날까지 '스티렌정의 요양급여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'은 위 개정 고시 이전(아래
 참고표 중 '고시 개정 전')내용임을 알려드리며, 위 사건의 판결 등에 따라 집행정치
 효력이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참고 - 고시 개정 전 · 후의 스티렌정의 요양급여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

구분	고시 개정 전	고시 개정 후
Artemisia asiatica 95% ethanol ext. 경구제 (품명 : 스티렌정 등)	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 며,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 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. -아 래- 가. 급성 위염, 만성 위염의 위점막병 변(미란, 출혈, 발적, 부종)의 개선 나. '비스테로이드항염제(NSAIDs)로 인한 위염의 예방'에는 스티렌정에 한해 인정	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 며,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 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. -아 래- ○ 급성 위염, 만성 위염의 위점막병 변(미란, 출혈, 발적, 부종)의 개선 <삭제>

끝.

대한병원협회장



대리 유소영 팀장 정윤학 국장 류항수

시행 : 보험 제 2014-333 (2014.06.23)

우 121-73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~15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6 전송 02-705-9259 (대표FAX : 02-705-9209) E-mail : ysy@kha.or.kr